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서울지방우정청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훈령(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) 개정

1. 관 련

- 가. 「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」(훈령 제661호)
- 나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(전자문서의 보관)
- 다. 「우정사업본부 훈령·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」(우정사업본부 훈령 제553호)
- 라. 인력계획과-1939(2017. 3. 13.) 지식누리(KP업무지식관리시스템) 시행
- 마. 감사관-1200(2017. 4. 11. 훈령 개정(안) 심사 결과 보고)

2. 위 관련으로 「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」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,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훈령을 개정하겠습니다.

- 붙임 1.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2.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신구문 대비표
3.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개정 전문. 끝.

주무관

윤숙영

감사관

박재석

청장

04/12
박종석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1211 (2017.04.12.) 접수 ()

☎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(서린동)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/se>
전화 [02-6967-9039](tel:02-6967-9039) / 전송 0505-005-1112 / tweety24@korea.kr / 공개